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4
----------	-------

발의연월일 : 2019. 1. 11.

발 의 자 : 민경욱 · 박덕흠 · 신보라
김성원 · 윤상현 · 주호영
유기준 · 이완영 · 정용기
엄용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빈집정비의 활성화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주택”을 “주택 등의 건축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주택”을 “건축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 등의 건축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 7. (생략) ② (생략)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 ----- ----- ----- -----주 택 등의 건축물-----. ----- 건축물-----. 2.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 ----- -----주택 등의 건축물-----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